

● 제320회 ●  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  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민간위탁(재위탁)  
동의안  
검 토 보 고 서

2023. 9. 4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  
수 석 전 문 위 원

## 【 서울특별시장 제출 】

의안번호 1179

### I. 동의안 개요

#### 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출일 : 2023. 8. 14.
- 다. 회부일 : 2023. 8. 21.

##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## 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,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평가·조정·지원 등 총괄기능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설립된 시설로서
- 여성인력개발기관(여성발전센터, 여성인력개발센터)의 총괄 조정 기능과 여성인력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·홍보·컨설팅 등 지원, 효율적인 여성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
-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·운영을 추진하고

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  
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(1)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운영
- (2) 위탁사무 :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운영 및 관리 일체
  -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
  -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총괄·조정·평가 및 지원
  - 여성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·창업 촉진 사업 추진
  -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
  - 그 밖에 여성능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추진
- (3) 위탁시설 개요
 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
 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89, 포스트타워 7층
  - 시설규모 : 전용면적 590m<sup>2</sup>
    - 공간구성: 사무실, 회의실, 교육장 등
  - 운영인력 :14명(원장 1명, 팀장 2명, 팀원 11명)
    - 2개팀(기획팀, 사업팀)
- (3) 위탁기간 : 3년(2024. 1. 1. ~ 2026. 12. 31.)
- (4)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위탁(공개모집)
- (5) 소요예산 : 금4,088,487천원('23년 예산)
  - 인건비 792,567천원, 운영비 527,986천원, 사업비 2,767,934천원

(6)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(2023. 7. 26.)

(7)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-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7조, 제25조
-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민간위탁 추진계획  
(양성평등담당관-11317호, 2023. 7. 13.)

○ 민간위탁 필요성

-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·운영을 통해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, 효율성 강화,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가능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-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7조, 제25조

나. 예산조치 : 2024년 예산 편성 예정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2023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 ※결과 : 79.74점
- 2023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: 적정

## 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### 1 동의안의 개요

-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의 관리·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「민간위탁조례」”라 함) 제4조의3제1항<sup>1)</sup>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고자 하는 것임.
- 서울시장이 위탁하려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 -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
  -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총괄·조정·평가 및 지원
  - 여성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·창업 촉진 사업 추진
  -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
  - 그 밖에 여성능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추진
-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5조<sup>2)</sup> 및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」 제29조<sup>3)</sup>,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

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3.25, 2021.12.30>

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9. 3. 28, 2021.12.30.>

③~⑤ (생략)

2)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5조(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3호<sup>4)</sup> 등에 따라 설치·운영 중인 시설로 서울특별시의 여성인력양성을 위한 총괄 교육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조정·평가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, 현재 재단법인 한국여성경제진흥원에서 위탁·운영 중이며 민간위탁 추진 경위는 아래와 같음.

<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민간위탁 추진 경위 >

| 구분 | 기간                   | 수탁기관         | 선정방법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차 | ‘08.5.1.~‘11.4.30.   | (재)서울시여성가족재단 | 공개모집                       |
| 2차 | ‘11.5.1.~‘14.9.30.   | (재)서울시여성가족재단 | 재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|
| 3차 | ‘14.10.1.~‘17.12.29. | (재)서울시여성가족재단 | 공개모집                       |
| 4차 | ‘17.12.30.~‘21.3.29. | (재)서울시여성가족재단 | 공개모집                       |
| 5차 | ‘21.3.30.~‘23.12.31. | (재)한국여성경제진흥원 | 공개모집<br>(시의회 동의 ‘20.12.16) |

- 2023년 제2회 종합성과평가에서 분기별 사업목표 달성에 따른 예산 집행률 관리와 실질적 성과관리 예산제를 차년도 사업에 활용하며 79.74점을 기록하였으나, 고용동향뿐만 아니라 여성일자리에 대한 총체적인 수요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개선요청사항으로 나타났음<sup>5)</sup>.

3)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29조(관련시설의 설치·운영)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,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.

4)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여성관련시설의 종류)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개정 2014.5.14., 2020.7.16., 2021.5.20.>

**3. 여성능력개발원 :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,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평가·조정·지원 등의 총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**

5) 서울특별시(2023.6), “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- 여성능력개발원 운영”, pp. 5~7.

- 다만 종합성과평가 결과 79.7점으로 재계약 요건을 충족(75점 이상)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은 동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시 재위탁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음.

### <2023년 종합성과평가 주요내용>

|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<b>주요성과</b>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직원 직무조사표가 단위작업과 작업량에 관련하여 기술되고 관리되고 있음.</li> <li>▶ 중점사업에 따라 지표를 반영하여 관리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목표관리를 수행함.</li> <li>▶ 분기별 목표달성에 따른 예산집행률 관리와 실질적 성과관리 예산제를 차년도 사업에 활용함.</li> </ul> |
| <p><b>개선과제</b>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고용동향에 대한 데이터 뿐만 아니라 여성일자리 수요에 대한 총체적인 수요에 대한 파악 필요함.</li> <li>▶ 물품 구매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사회적 기업이 물품구매 효과적 진입할 수 있게 기반 마련할 것을 권고함.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2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

-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,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.
- 「지방자치법」제117조제3항6)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7) 및 제4조제3호8)에 따르면 시장

6) 「지방자치법」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은 양성평등정책 관련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, 여성능력개발원의 운영은 시장의 사무라 할 것임.

- 「민간위탁조례」 제4조제1항제3호<sup>9)</sup>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“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”를 법인·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 서울특별시의 여성일자리 정책 총괄 추진 체계로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여성능력개발원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.
- 또한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5조<sup>10)</sup>에서 시장의 사무인 여성발전센터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.

---

7)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(기본원칙) 서울특별시장은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지역적 균형과 사회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관련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.

8)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여성관련시설의 종류)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**3. 여성능력개발원 :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,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평가·조정·지원 등의 총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**

9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**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삭제

10)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25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의2호에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<개정 2017.9.21., 2020.7.16., 2021.5.20>

### 3 종합 검토 의견

- 금번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
- 또한 여성의 취·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 등 서울특별시의 여성일자리 정책을 위한 총괄 기능 수행 등 그 사무의 전문성 및 노하우를 고려할 때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